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사건 2016두70 재심청구의 소

원고(상고인) 임그루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피상고인)의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케이티

대표이사 회장 황창규

위 사건에 관한 원고(상고인, 이하 '원고'라 합니다)의 상고이유서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케이티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다음



1. 이 사건 상고의 부적법성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서울고등법원 2000누6383호(기각) 및 대법원2000두8004호(기각), 서울고등법원 2001재누15호(기각), 대법원 2004두6013호(심리불속행 기각), 서울고등법원 2004재누122호(기각), 대법원 2005두7624호(심리불속행 기각), 서울고등법원 2006재누171호(기각) 대법원 2007두17809호(심리불속행 기각), 서울고등법원 2007재누 192호(기각), 대법원 2008두 7045호(심리불속행 기각), 서울고등법원 2008재누236호(기각), 대법원 2009두5589호(심리불속행 기각), 서울고등법원 2009재누189호(기각), 대법원

2009두22010호(심리불속행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0재누62호(각하), 대법원 2011두11372호(심리불속행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1재누229호(각하), 대법원 2012두12358호(심리불속행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2재누172(각하), 대법원 2013두2341호(심리불속행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3재누148(각하), 2014재누275(각하)에서 모두 기각 또는 각하로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즉, 원고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 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동일한 이유로 기각판결 또는 각하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한 것인바, 이는 “법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였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재다 303판결 등 참조)”,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소를 소권을 남용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여 각하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입니다.

2. 재심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상고이유서에서 재심대상 판결(서울 행정법원 사건 99구23983)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재심대상 판결이 어떤 사항을 누락하였다는 것인지, 그 사항이 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원고는 재심대상 판결서의 이유에 원고의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의 표시가 누락되었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 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할 필요가 없으며(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서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 누락이라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7.10 선고2006재다218 판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이, 원고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하 또는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

위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케이티

대표이사 회장 황 창 규



대법원 귀중